Research Paper Informatization Policy Vol. 29, No.3 (2022), pp.048-060
https://doi.org/10.22693/NIAIP.2022.29.3.048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정치:
신제도주의로 본 연방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논의

최 재 동*

요 약 이 연구는 미국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 논의를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내구력을 유지하며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본틀을 구성해왔던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다. 이 조항을 개폐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초당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 논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동은 가짜뉴스나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외생적 사건과 함께, 행위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내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거버넌스의 제도개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주제어 :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 연방통신품위법 230조, 신제도주의, 가짜뉴스,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 갈등

The Politics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n the U.S.:
A Case Study on 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 Reform with New Institutionalist Approach

Choi, Jaedong*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potential reform of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through the new institutionalist approach. The immunity provision of the Section 230, which has developed the U.S. Internet content regulation regime and protected big tech firms, is facing a significant change today. The chambers of Congress have attempted to limit the immunity shield for platforms with bipartisanship. As a result of analysis through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 critical change could come from external events including fake news controversies and data privacy scandals, as well as endogenous factors such as conflicts among actors. The discussion deals with the possible direction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reforms in Korea.

Keywords : Internet content regulation, CDA Section 230, new institutionalism, fake news, data privacy scandal, actor conflict

Received Jun 7, 2022; Revised Jun 9, 2022; Accepted Jul 11, 2022
* Research Professor, BK21,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jdchoi1981@gmail.com)

I. 서론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미국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230조 개정 논의를 분석하였다. 지난 26년간 오랜 내구성을 유지하며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본 틀을 구성해왔던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다. 이 조항을 개폐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버지니아의 워너(Mark Warner, D-VA), 하와이의 히로노(Mazie Hirono, D-HI), 미네소타의 클로버샤(Amy Klobuchar, D-MN) 상원의원이 연방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는 법안(SAFE TECH)을 2021년 2월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히로노 의원은 2월 8일 상원 본회의 발언을 통해 230조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하면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Congressional Records, 2021). 이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230조를 통해 법적 면책을 부여받는 대신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불법 내용물을 자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s)'이 될 것을 요청받았으나, 불법 게시물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폭력, 살인과 같은 사건들을 방조하였다.

배경과 맥락은 다르지만 공화당 역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레이엄(Lindsey Graham, R-SC) 상원의원은 16명의 공동발의자가 참여한 초당적인 법안인 EARN IT Act를 2020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s)에 대해서는 230조의 면책 조항을 유예함으로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게시물의 유통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있다. 비록 민주, 공화 양당이 법안 개정에 대한 다소 상이한 관점과 시각을 갖고 있으나, 오늘날 미국 정치권에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MacCarthy, 2021; Napoli, 2021).

그렇다면 오랜 내구력을 유지해온 연방통신품위법 230조 레짐은 어떤 이유로 전환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본 연구는 제도의 지속과 변화에 대해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으로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시도한다. 먼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의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접근법은 외생적 사건을 정책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한다(Hacker & Pierson, 2014; Ikenberry, 1988; Krasner, 1984; Roberts & Geels, 2019). 예컨대, 플랫폼화(Platformization)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부정적 여론(Techlash)의 확산은 2016년 미국 대선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가짜뉴스(Fake News) 확산이나 2018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Cambridge Analytica Scandal)'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같은 외부적 사건에 기인하였을 수 있다.

반면, 역사적 제도주의 내에서도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내생적인 요인이 점진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Capoccia, 2016; Hacker, 2004; Hall & Taylor, 1996; Mahoney & Thelen, 2010; Thelen, 2004). 이 같은 관점에 따르면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는 제도 내 행위자 간의 갈등이나 경쟁에 따른 상황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기업이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뉴스의 소비활동까지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뉴스사업자들은 뉴스미디어 동맹(News Media Alliance)과 같은 이익집단 활동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고 뉴스생태계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저널리즘 경쟁과 보전 법안(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과 같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로비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 사업자들의 로비단체(Internet Association)는 회원사 사이의 이익조정 등의 문제로 내홍을 겪다가 2021년 11월 해체되었다(Gold & McGill, 2021). 이 같은 이익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는 인

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를 더 강화하는데 기여했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연방통신품위법 230조가 만들어낸 현재의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은 외부적 충격과 함께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제도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이 연구는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화가 외부적인 변동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이해하고 분석을 시도한다.

Ⅱ. 기존 문헌 검토: 제도는 왜 변화하는가?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법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제도 변화의 주요 동인이라는 입장과 제도 내부의 변동 요인을 주목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Capoccia, 2016; Hacker, 2004; Hacker & Pierson, 2014; Hall & Taylor, 1996; Ikenberry, 1988; Krasner, 1984; Mahoney & Thelen, 2010; Roberts & Geels, 2019; Thelen, 2004). 먼저, 외부의 충격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중대한 시기(Critical Junctures)'나 '경로의존성'과 같은 개념들을 중요시한다. 중대한 시기란 구조가 행위자들을 제약하는 힘과 영향력이 완화되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의미하는데, 이 기간 동안 제도 내 행위자들은 선택의 폭을 상대적으로 넓히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Capoccia & Kelemen, 2007). 그러나 이 시기를 거치면서 특정한 정책적 대안이 선택될 경우, 이 대안은 점차 고착화되어 이후에 더 나은 대안이 새롭게 출현하더라도 한번 만들어진 경로를 계속해서 답습하게 된다. 경로의존성은 구체적으로 특정 제도에 특화된 기술, 특권, 지식, 네트워크와 같은 유무형의 자산들이 점차 일상화되고 관행화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Capoccia, 2016). 그러나 이 같은 경로의존적 접근법은 제도의 잦은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힘이 부족하며, 제도 내 행위자의 역할과 자율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 역시 받아 왔다.

이에 최근의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은 내부로부터의 점진적인 제도변화에 주목하고 있다(Capoccia, 2016; Mahoney & Thelen, 2010; Scott, 2014). 이 같은 입장에 따르면 제도는 경로 의존적이지 않으며, 내재하는 갈등과 긴장으로 인해 제도 내부로부터 점진적인 변화의 동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 접근법 역시 제도 변화의 인과 메커니즘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인과적 관계를 이론화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왔다. 구체적으로 최근의 연구들은 행위자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Capoccia, 2016; Emmenegger, 2021). 실제로 규칙을 제정하는 쪽과 규칙에 순응하는 쪽 사이에 규칙의 준수와 해석 등의 문제를 두고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고수하기 위해서나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력규합(Coalition Building)의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력 전이가 나타난다면 제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은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내부 행위자 갈등을 제도 변화의 요인으로 인식하면서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같은 이분법적 구분이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실효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실제로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 정책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단절평행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등의 분석틀 역시 제도와 정책의 변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외생적인 사건과 행위자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먼저, Kingdon(1984)의 다중흐름모형은 다차원적인 흐름(Streams)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개방되고 정책 변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의 개별적 흐름들이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정책의 창이 개방되기 위해서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행위자인 정책선도가(Entrepreneur)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정책옹호연합은 옹호연합, 정책학습, 외부적 사건, 정책변화 등을 핵심적 개념으로 포함한다.

상이한 신념체계를 갖는 정치적 행위자들은 옹호연합을 구성하는데, 정책의 변화는 정책의 학습이나 외생적 사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핵심적 신념체계(Core Policy Beliefs)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주요한 정책변동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주변적(Secondary Policy Beliefs) 신념의 변화는 사소한 정책변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Sabatier & Jenkins-Smith, 1999).

마지막으로, 단절평행이론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인 변동의 과정(Incrementalism)을 겪는 정책이 어느 순간 급격한 변동(Punctuation)의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는 평형상태(Equilibrium)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Jones and Baumgartner(2005)는 더 나아가 점증적 정책 변동과 급진적 정책 변동을 통합하는 '불균형적 정보처리(Disproportionate Information Processing)'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정책결정자 그룹의 '인지적 불완전성(Bounded Rationality)'이 안정과 단절이라는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여러 접근법들은 제도 변화의 요인으로 외생적 변수와 내생적 요인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본 연구 역시 제도의 변동이 외부적 사건과 내부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특별히 이 글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방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논의와 이에 따른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동 가능성은 가짜뉴스나 정치적 스캔들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전통 미디어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 간의 경쟁과 같은 내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Ⅲ.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형성과 발전

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Skorup & Huddleston, 2020).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는 *Abrams v. United States*(1919) 판결로 유명해진 '사상의 자유시장론(Marketplace of Ideas)'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Chang, et al., 2021 재인용). 즉,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표현에 대한 자유를 위축시킬 뿐이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살아남는 아이디어가 사회적으로 수용된다는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형성된 경로를 벗어나 인터넷 내용물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996년 시행된 연방통신품위법(CDA)이다.

연방통신품위법은 인터넷상의 음란하거나 외설적(Obscene and Indecent)인 표현물들로부터 미성년자(Minors)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Flick, 2017; Wagner, 2013).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는 불법내용물에 대한 규제를 이미 방송매체에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뉴미디어로 부상하던 인터넷에도 전통 미디어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진영에서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기간 법률의 합헌 여부를 검토한 연방대법원은 1997년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판결을 통해 연방통신품위법의 외설(Indecency) 조항에 대한 부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외설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Chang, 2005; Hwang, 2010). 매체특성론적 접근(Medium-specific approach)이란 매체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매체에 대한 규제 수준이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대중매체(라디오,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희소한 공공재인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고, 미디어 영향력(Media Effects) 측면에서도 인터넷 출현 이전 시기에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규제의 적용이 불가피한 반면, 인쇄 매체(신문)는 독자가 취사선택하기 때문에 미디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

하므로 비교적 온건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 따른다면 인터넷은 분절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무제한에 가까운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존 매체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터넷의 태동과 형성기부터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와 같은 탈규제 정책을 견지하였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현재의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은 연방통신품위법 230조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왔다. 연방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물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Broad Liability Shield)받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Flick, 2017; Timmer, 2017). 230조는 크게 두 개의 세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을 출판업자(Publisher)나 발화자(Speaker)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물에 대한 민사·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 230(c)(1)). 둘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웹사이트에 게재된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경우 해당 내용물의 게시자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소송으로부터 사업자들을 보호한다(§ 230(c)(2)).

이상의 연방통신품위법 면책 조항들은 인터넷 사업자들을 미디어가 아닌 기술 기업(Tech Company)로 분류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 있던 당시 인터넷 사업자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로서 역할했다.[1] 결과적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은 소송으로 인한 물리적·심리적 손실 없이 사업의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예컨대 2019년을 기준으로 페이스북과 구글은 전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의 60%와 인터넷 트래픽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구글의 경우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Flew, 2019). 특별히 2010년대에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활성화되고 인터넷의 플랫폼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플랫폼화는 사업의 수평적 다변화와 수직적 통합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Multisided Users)들을 플랫폼 안으로 유인 및 매개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확장 전략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Nieborg & Helmond, 2019).

그러나, 소수의 인터넷 사업자들이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고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인터넷이 더 이상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는 비판이 급속하게 대두되었다. 최근 미국 정가에서는 연방통신품위법의 230조의 개정 또는 폐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Flick, 2017; MacCarthy, 2021).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Congress.gov)에 따르면 2021년 회기가 시작된 117대 의회에서만 이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16개의 입법안이 상정되어 있다(〈표 1〉). 흥미로운 점은 민주, 공화 양당이 230조의 개폐를 초당적으로 논의하면서도 저마다 상이한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Napoli, 2021). 먼저 민주당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알고리즘이 우경화된 백인 우월주의나 폭력, 혐오 콘텐츠의 확산을 조장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물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법안의 개폐를 논의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좌편향된 플랫폼이 보수적 견해들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Curation)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에게 부여되었던 230조의 면책 특혜는 개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화당은 인터넷 음란물과 성착취물 등의 규제를 위해 230조의 모호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230조의 면책 조항이 폐지될 경우, 미국

1)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하는 행위를 편집 행위로 간주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을 발행인(publisher)이나 편집인(editor)으로 분류하게 되지만, 단순 배포권(distribution)을 갖는 것으로 보아 기술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표 1〉 통신품위법 230조 관련 입법안 목록(117대 의회)
〈Table 1〉 Introduced Bills regarding CDA Section 230 in the 117th Congress

Date	Sponsor	Bill	Summaries
Jan.22. 2021	Manchin, J. [D-WV]	**S.27**-See Something, Say Something Online Act	Requiring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that detects a suspicious U.S. transmission to submit a report
Jan.26. 2021	Rubio, M. [R-FL]	**S.47**-APP Act	Placing limits on protections from liability for third-party publishers of content to owners of foreign software
Feb.5. 2021	Gohmert, L. [R-TX-1]	**H.R.874**-Abandoning Online Censorship Act	Repeal of Section 230
Feb.8. 2021	Warner, M. [D-VA]	**S.299, H.R.3421** SAFE TECH Act	Placing limits on federal liability protection
May.20. 2021	McEachin, D. [D-VA-4]		
Mar.17. 2021	Schatz, B. [D-HI]	**S.797**-PACT Act	Requiring providers of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to publish their policy explaining the types of content permissible on the service
Mar.18. 2021	Banks, J. [R-IN-3]	**H.R.2000**-Stop Shielding Culpable Platforms Act	Modifying provisions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illegal content (child pornography).
Mar.23. 2021	Malinowski, T. [D-NJ-7]	**H.R.2154, S.3029** Protecting Americans from Dangerous Algorithms Act	Placing limits on a social media company's immunity from liability
Oct.20. 2021	Lujan, B. [D-NM]		
May.27. 2021	Matsui, D. [D-CA-6]	**S.1896, H.R.3611** Algorithmic Justice and Online Platform Transparency Act	Establishing requirements for certain commercial online platforms that withhold or promote content through algorithms
May.31. 2021	Markey, E. [D-MA]		
Sep.13. 2021	Blumenthal, R. [D-CT]	**S.2725, H.R.7819** Accountability for Online Firearms Marketplaces Act	Removing the federal liability protection for providers in an online firearms marketplace.
May.18. 2022	Crow, J. [D-CO-6]		
Nov.15. 2021	Mace, N. [R-SC-1]	**H.R.5977** States Reform Act	In progress
Mar.3. 2022	Warren, E. [D-MA]	**S.3758, H.R.6928** SAFE SEX Workers Study Act	Conducting a study on the impact that SESTA/FOSTA has had on sex workers.
	Khanna, R. [D-CA-17]		

source: https://www.congress.gov/ (Retrieved on June 5, 2022.)

인터넷 내용규제의 핵심 원칙인 자율규제(Self Regulation)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Mullin, 2021). 즉, 230조의 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행위가 보호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가짜뉴스의 생산자들에 제기하는 소송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Ⅳ. 연방통신품위법 230조 개편의 외생적·내생적 요인

1. 제도 변화의 외생적 요인

FAKE NEWS - A TOTAL POLITICAL WITCH HUNT! [2]

여러 기존 연구들과 미디어 보도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가짜뉴스 논란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같은 사건들을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를 촉발시킨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Flick, 2017; Timmer, 2017; Weisbaum, 2018). 즉, 경로의존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의 해석을 따른다면 2016년과 2020년의 미국 대선 과정, 그리고 2018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연방통신품위법 230조가 만들어낸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경직성을 이완시킨 외생적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이 시기(2016-2020년)를 구조적 제약요건이 완화된 중대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먼저, 트럼프가 출마했던 두 차례의 대선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나 가짜뉴스[3]가 대량으로 유포되고 확산되었다. 2016년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조작정보들은 대체적으로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반면 힐러리에게는 부정적인 정파적 편향성을 보였다(Timmer, 2017). 예컨대 '힐러리가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에 무기를 팔았다'던가 '교황(Pope Francis)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공유되고 유통되었다. 이처럼 정파적으로 편향된 가짜뉴스 수위(Top) 사이트의 허위조작정보들은 2016년 대선 기간의 마지막 3개월 동안 주류 언론(NYT, WP, NBC)의 기사들보다 SNS상에서 더 많이 공유되고 확산되었다. 정파성을 띠는 허위조작정보는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과정에 위해를 가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짜뉴스가 2020년 대선 과정에서 선거 불복과 폭력을 수반했다는 것이다. 2020년 대선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근거 없는 허위정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초유의 소요사태를 야기하였다.[4] 의사당 난입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미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문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되어 현재 의회 차원에서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가짜뉴스 유통의 채널로 지목되어 큰 비판을 받았다. 또, 빅테크 기업에게 주어진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다. 주지하듯 플랫폼화된 페이스북은 압도적인 이용자 수와 접속량을 자랑한다. 미국 내 페이스북 이용자는 2억 명에 달하며, 이들은 하루 평균 50분 이상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또한 미국 성인의 44%가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짜뉴스가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과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증할 수 없지만, 오늘날 정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두 가지 특징—복제의 무제한성과 유통의 속도—과 플랫폼으로서 페이스북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된 가짜뉴스가 선거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2) 2017년 1월 11일 게재된 이 트윗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트럼프(@realDonaldTrump)가 작성한 것이다. CNN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당국의 보고가 트럼프에게 전달되었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는 이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했다. 이후 트럼프는 러시아의 대선 관여 논란이 일 때마다 자신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3)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가짜뉴스는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개념화된 용어는 아니다. 이 용어를 확산시킨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미디어를 지칭할 때,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어버와 카카오는 뉴스 기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언론에서 발행한 것처럼 보여지는 정보를 가짜뉴스로 규정한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감 역시 부정적이어서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조작·오정보(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라는 용어의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Park, 2019: Chang et al., 2021 재인용).

4) 이후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은 영구정지 처분을 받고 폐기되었으며, 페이스북 계정 역시 2023년 1월까지 일시정지 처분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이후 재심의를 통해 계정의 영구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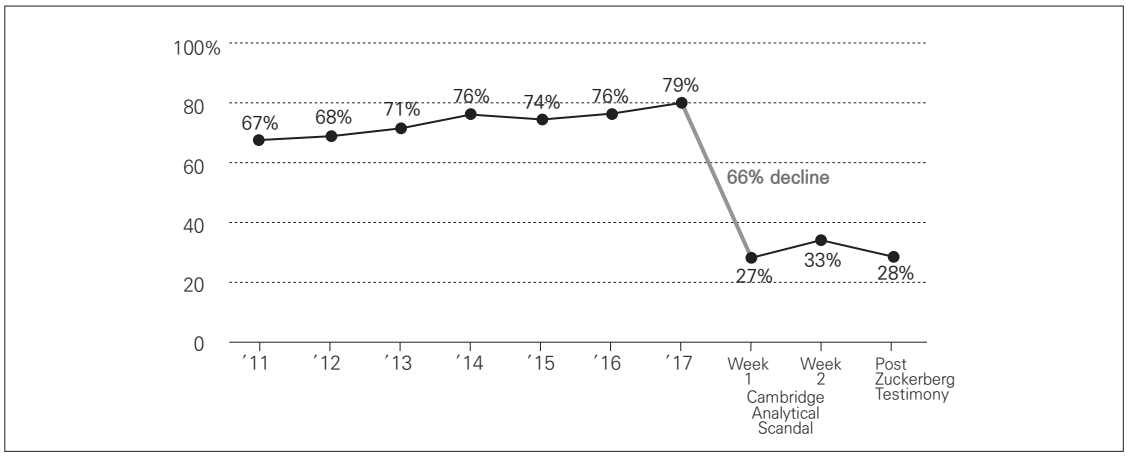

source: https://www.nbcnews.com/business/consumer/trust-facebook-has- dropped-51-percent-cambridge-analytica-scandal-n867011 (Retrieved on June 5, 2022.)

〈그림 1〉 페이스북의 신뢰도 추락(2011-2018년)
〈Fig. 1〉 Losing Trust in Facebook from 2011 to 2018

페이스북은 업체의 광고 알고리즘이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구조적 동기(Incentive Structure)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큰 비판을 받았다(Braun & Eklund, 2019; Soares, 2017). 실제로 상당수의 가짜뉴스 제작자들(Click Farms)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 국내의 정파적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단순한 영리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이들은 월 1만 불에서 3만 불까지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이스북 역시 자사의 플랫폼에 게재된 가짜뉴스로 인해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윤리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로부터의 선거 개입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가짜뉴스 유통의 책임론과 선거 과정 왜곡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의 핵심 관계자들은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Timmer, 2017).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총량에 비해 가짜뉴스의 유통량이 미미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같은 페이스북의 태도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을 거치면서 급변하게 되었다(Weisbaum, 2018).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영국계 컨설팅 업체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2013년부터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 대략 9천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 정보들은 2016년 미국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캠페인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2018년에서야 내부자에 의해 폭로되었는데,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인 저커버그(Zuckerberg)는 의회 청문회로 소환되었다.

〈그림 1〉은 이 정치적 스캔들이 페이스북에 미친 여파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2010년대 초중반은 물론이고 2016년 이후까지도 완만한 상승세(67%-79%)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캔들 이후 페이스북에 대한 높은 지지와 신뢰는 27%로 폭락하였다. 페이스북에 대한 불신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왓츠앱 등 경쟁사들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더 큰 불신을 받고 있다(Kelly & Guskin 2021).

요컨대 가짜뉴스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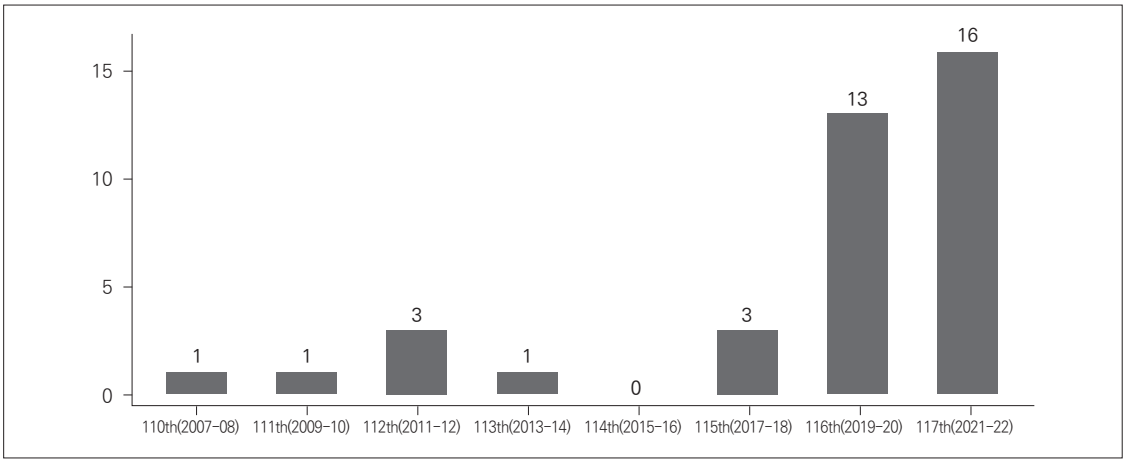

〈그림 2〉 연방통신품위법 개정안 제출 현황(110대-117대 의회)
〈Fig. 2〉 Number of CDA Reform Bills from 110th to 117th Congress

적으로 환기하여, 고착화된 제도의 구조를 뒤흔든 외생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연방통신품위법 개정과 관련된 입법 발의 현황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림 2〉에서 보여 주듯, 110대에서 115대 의회 시기에는 개정 발의안의 건수가 미미(0-3건)하다가, 116대 의회에서부터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외생적 사건들이 초래한 정치과정의 위기가 미국 의회에서 통신품위법 개정 논의를 촉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제도 변화의 내생적 요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반독점(Antitrust) 규제의 정서가 강한 미국에서 주로 경쟁 업계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OECD, 2021). 즉, 제도 변화의 내생적 요인을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분파의 입장에 따른다면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과 경쟁상황이 점진적인 제도 변화를 견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위자 간의 갈등은 특히 뉴스사업자들(News Publishers)과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시장지배력과 협상력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두고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 뉴스사업자들의 수익모델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ope)와 광고 수입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기존 수익모델은 크게 타격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의회는 2006년에서 2018년간 뉴스사업자의 광고 수익이 50%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퓨리서치 역시 2000년 487억 달러에서 2020년 88억 달러로 격감했다고 분석했다(OECD, 2021). 결과적으로 뉴스사업자들의 수익이 악화되면서 기자해고, 보도 범위와 역량의 축소는 물론이고 폐간하는 업체 역시 등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뉴스 공급의 측면에서 온라인의 등장은 뉴스 제작과 유통 비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뉴스 산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이른바 시민저널리즘까지 출현하면서 경쟁이 격화된 것이다. 뉴스사업자들은 단기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채널을 활용하여 뉴스를 배포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의 이목 끌기(Attention Market), 편집권(Gatekeeping), 뉴스 제작 등의 영역에서 플랫폼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뉴스 품질의 저하뿐만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최근 뉴스

사업자들은 불균형의 문제를 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3월 미네소타의 클로버샤(Amy Klobuchar, D-MN), 루이지애나의 케네디(John Kennedy, R-LA)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저널리즘 경쟁과 보존 법안(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은 뉴스사업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 플랫폼 기업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에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뉴스사업자들은 로비단체인 '뉴스미디어 동맹'을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서한을 의원들에게 보내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Legety, 2022). 특히 영세 규모의 로컬 뉴스사업자들이 활동에 적극적이다.

반면, 뉴스사업자들의 로비를 상쇄해야 할 플랫폼 사업자들의 로비단체인 '인터넷 협회(Internet Association)'는 2021년 11월 해체되었다(Gold & McGill, 2021). 2012년 설립된 이 로비단체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을 회원사로 포함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의 이해관계를 워싱턴 정가에 대변하는 임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소수의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나머지 회원 업체들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들 사이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점차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익집단과 달리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단체 활동에 대한 관여가 적은 관계로 조직의 존재감과 활동의 무게감에 대한 논란 역시 지속되었다. 결국 거대 플랫폼들이 개별적 사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인터넷 협회는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논의한 두 가지의 외생적, 내생적 사건들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요구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전통적으로 플랫폼 기업은 다양한 사용자들을 매개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이용자들과 친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권력을 행사해 왔으나(Culpepper & Thelen, 2020), 가짜뉴스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을 겪으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두터웠던 이용자층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뉴스사업자들과 플랫폼 업체들 간의 갈등과 경쟁은 정치권에 의한 새로운 규제 시도를 유인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COVID-19의 세계적인 유행과 전염병과 관련된 가짜뉴스의 유포(Infodemic) 역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요구를 더 강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바이러스 기원설은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 발언과 증오 범죄를 급증시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V. 결론

2022년 5월 31일 연방대법원은 *Netchoice v. Paxton* (2022) 판결을 통해 SNS 업체의 게시물 규제행위를 금지한 텍사스 주법(H.B. 20)에 대해 일시적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텍사스 주지사 애봇(Greg Abbott, R)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보수적인 관점과 생각을 규제하는 빅테크 업체의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입법 의도를 설명한 바 있다(Millhiser, 2022). 이처럼 개별 주들, 특별히 공화당의 텃밭(Red States)에서는 연방통신품위법 230조가 만들어낸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30여 년 가까이 내구력을 유지해온 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이 이 같은 변동의 기로에 서게 된 이유를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제도 변화의 외생적 요인 또는 내생적 요인을 주목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으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 논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동은 미국 선거 과정과 민주주의를 침식시켰던 가짜뉴스 및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 같은 외생적 사건과 함께, 뉴스사업자들과 인터넷 사업자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내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복합적 요인은 정치권과 대중들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규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들은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들을 제시하고 있다(Ahn, 2021). 특히 가짜뉴스 유통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에 대한 노출 빈도수를 낮추어 가짜뉴스 제작을 통한 영리 추구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를 탐색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계학습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성 내용물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Flags)를 부착하여 해당 콘텐츠의 진위 여부가 논쟁 중에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사실 검증(Fact Check) 사이트들과 제휴하여 내용물의 진위 여부를 가리고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 성향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 역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존치를 위한 로비와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텍사스 사례에서 보여지듯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례를 분석한 이 연구가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의 방향성과 제도개선에 어떤 함의를 지닐 수 있을까? 유무선 인터넷의 인프라와 이용이 고도화된 우리나라는 허위조작정보나 혐오 표현, 명예훼손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배태하고 있다. 특별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정서적 양극화 현상이 점증하면서 미국처럼 가짜뉴스로 인해 선거 과정이 왜곡될 위험도 존재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명시되어 있는 위법한 정보에 대한 삭제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도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때 생기는 불이익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Jung, 2022).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공적 규제기관과 민간 자율규제기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Ahn, S. (2021). "The US response to fake news." *2021 International Media Law Research*. Seoul: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안서우 (2021). 미국의 거짓 정보 문제와 대응방안. 〈2021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1-38.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Braun, J. & Eklund, J. (2019). "Fake News, Real Money: Ad Tech Platforms, Profit-Driven Hoaxes, and the Business of Journalism." *Digital Journalism,* 7(1), 1-21.

Capoccia, G. (2016). "When do institutions "bit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chang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9*(8), 1095-1127.

Capoccia, G. & Kelemen, D. (2007). "The Study of Critical Junctures: Theory, Narrative, and Counterfactuals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orld Politics, 59*, 341-369.

Chang, W. (2005). "The Policy of Contents Regulation on the Internet of EU."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8*(4), 3-33.

{장우영 (2005). EU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국제지역연구〉, 8권 4호, 3-33.}

Chang, W., Gil, J., Kim, J., Min, H. & Choi, J. (2021).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cision-Making in an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novations in Legislature and Party Politics." *Broadcast and Communications Policy Studies, 2021-0-00008,* 38-58.

{장우영·길정아·김정연·민희·최재동 (2021). 정치적 의사결정 및 정치참여 방식의 디지털 전환과 의회 정당정치의 혁신. 〈방송통신정책연구 2021-0-00008〉, 38-58.}

Congressional Records (2021). S574. February 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 "Children and the Internet: Legal Considerations in Restricting Access to Content." *CRS Report,* March 14.

Culpepper, P. & Thelen, K. (2020). "Are We all Amazon Primed? Consumers and the Politics of Platform Power."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3*(2), 288-318.

Dwoskin, E. (2021). "Facebook's reversal on banning claims that covid-19 is man-made could unleash

more anti-Asian sentiment." *Washington Post*, May 28.

Emmenegger P. (2021). "Agency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oalitional work in the creation, maintenance, and change of institutions." *Theory and Society, 50*, 607-626.

Flew, T. (2019). "The Platformized Internet: Issues for Internet Law and Policy." *Journal of Internet Law*, 3-16.

Flew, T., Martin, F. & Suzor, N. (2019). "Internet regulation as media policy: Rethinking the question of digital communication platform governance." *Journal of Digital Media & Policy, 10*(1), 33-50.

Flick, D. (2017). "Combatting fake news: alternatives to limiting social media misinformation and rehabilitating quality journalism." *Science and Technology Law Review, 20*(2), 374-405.

Gold, A. & McGill, M. (2021). "The fractured tech lobby's uphill battles." *Axios*, January 14.

Hacker, J. (2004). "Privatizing risk without privatizing the welfare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 243-260.

Hacker, J. & Pierson, P. (2014). "After the 'master theory': Downs, Schattschneider, and the rebirth of policy-focused analysis." *Perspectives on Politics, 12*(3): 643-662.

Hall, P. & Taylor, R. (1996).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44*, 936-957.

Hwang, S. (2010).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Internet and Election Campaign."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9*(1), 177-229.

{황성기 (2010). 인터넷과 선거운동. 〈언론과 법〉, 9권 1호, 177-229.}

Ikenberry, J. (1988).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1): 219-243.

Jones, B. & Baumgartner, F. (2005). *The Politics of Attention: How Government Prioritizes Problem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ung, K. (2022). "A Study of Restriction on Untrue Facts under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Study of Election, 16,* 147-170.

{정관선 (2022). 공직선거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16호, 147-170.}

Kingdon, J. (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Little, Brown and Company.

Kelly, H. & Guskin, E. (2021). "Americans widely distrust Facebook, TikTok and Instagram with their data, poll finds." *Washington Post,* December 22.

Krasner, S. (1984). "Approaches to the state." *Comparative Politics, 16,* 223-246.

Legeyt, C. (2022). "Congress must act to preserve the future of local journalism." *The Hill,* May 16.

Levi, M. (2008). "Reconsiderations of Rational Choice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Analysis." In Lichbach, M. & Zuckerman, A. (ed.) *Comparative Politics: Rationality, Culture, and Struc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cCarthy, M. (2021). "Back to the future for Section 230 reform." *Brookings,* March 17.

Mahoney, J. & Thelen, K. (2010).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poli, P. (2021). "Back from the dead again: The specter of the Fairness Doctrine and its lesson for social media regulation." *Policy & Internet, 13,* 300-314.

Nieborg, D. & Helmond, A. (2019). "The political economy of Facebook's platformization in the mobile ecosystem: Facebook Messenger as a platform instance." *Media, Culture, & Society, 41*(2), 196-218.

OECD. (2021). Competition Issues concerning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OECD *Competition Committee Discussion Paper*

Millhiser, I. (2022). "The Supreme Court shuts down Texas's attempt to seize control of social media — for now." Vox, May 31.

Mullin, J. (2021). "Changing Section 230 Won't Make the Internet a Kinder, Gentler Plac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June 17.

Park. A. (2019). "A Critical Perspective on Regulating 'Fake News' & Disinform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6*(2), 113-155.
{박아란 (2019).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언론정보연구〉, 56권 2호, 113-155.}
Powell, W. (1991). "Expanding the Scope of Institutional Analysis." In Powell, W. & DiMaggio, P. (ed.)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oberts, C. & Geels, F. (2019). "Conditions for politically accelerated transition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multi-level perspective, and two historical case studies in transport and agriculture."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40,* 221-240.
Sabatier, P. & Jenkins-Smith, H. (1999).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Colorado: Westview Press.
Scott, R. (2014).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deas, Interests and Identities.* CA: Sage.
Senate Congressional Record. (2021). *S.574.* February 8.
Skorup, B. & Huddleston, J. (2020). "The erosion of publisher liability in American law, section 230, and the future of online curation." *Oklahoma Law Review, 72*(3), 635-673.
Soares, I. (2017). "The fake news machine: Inside a town gearing up for 2020." *CNN Money,* September 16.
Thelen, K. (2004). *How institutions evol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immer, J. (2017). "Fighting falsity: Fake news, Facebook, and the first amendment."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35*(3), 669-706.
US Congress https://www.congress.gov (Retrieved on June 5, 2022).
Wagner, B. (2013). "Governing Internet Expression: How Public and Private Regulation Shape Expression Governanc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Politics, 10,* 389-403.
Weisbaum, H. (2018). "Trust in Facebook has dropped by 66 percent since the Cambridge Analytica scandal." *NBC News,* April 19.